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90호 2009. 3. 18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1
- 정선군고시 제2009-26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2
- 정선군고시 제2009-2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3
- 정선군고시 제2009-28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고시..... 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153호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5
- 정선군공고 제2009-156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6
- 정선군공고 제2009-160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
- 정선군공고 제2009-162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5
- 정선군공고 제2009-163호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 금지 공고..... 20
- 정선군공고 제2009-176호 2009년 정선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21
- 정선군공고 제2009-178호 2009년 2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4
- 정선군공고 제2009-179호 2009신동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편입 보상계획공고.. 28
- 정선군공고 제2009-182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09-25호

고 시 문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3. 09.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북평면장	주 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2-1번지
하 천 명		골지천(지방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001-1번지 일원		
	면 적	A=5,700㎡ V=2,200㎡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9년 03월 09일 ~ 2009년 12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남평2리 배수로정비 및 나전2리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		

정선군고시 제2009-26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3. 11.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황 승 석	주 소	정선군 남면 유평리 70-1번지
하 천 명		공유수면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남면 유평리 62번지선		
	허가량	A = 1,586 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3월 09일 ~ 2011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농경지 사용(전:1,586m ²)		

정선군고시 제2009-2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3. 11.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박 재 영	주 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9번지
하 천 명		공유수면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4-3구(316-1번지선)		
	허가량	A = 183 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3월 09일 ~ 2011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농경지(전)		

정선군고시 제2009-28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3. 13.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황 희 중	주 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6번지
하 천 명		지장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90번지선(산89-1천)		
	허가량	698㎡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3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대지 진·출입로		

정선군공고 제2009-153호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정선군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구 분	계	내국인	외국인	비 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34,340	34,329	11	

※ 내국인에 제외국민(4명) 포함

※ 내국인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외국인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2009. 03. 04.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156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09. 03. 06.

정 선 군 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장 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열람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번지 외 10,102호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0만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09.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160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3. 6.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이전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 및 그에 따른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축 준공과 동시에 복지관을 개관하여 군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조례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 위탁 할 수 있음 (안 제8조)
-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나. 시행규칙

-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안 제2조)
-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 수탁자 회계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 직원의 채용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담당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588

－ 문의전화 : 033-560-2170, 560-2933

붙임 1.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에 둔다.

제3조(적용 범위) 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사업,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
3.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사업 등
4.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 사업 등
5. 자활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6. 기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자
4. 기타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수탁운영 포함)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복지관 운영 능력과 그에 필요한 경제력이 있는 법인

제7조(위탁의 협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취소 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 위탁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 위탁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에 충당하여야한다.
4. 수탁자는 시설에 투자나 재 투자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장비·기타 재산 및 지원 받은 비용은 수탁 목적과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대여·전매·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6.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관리) 군수는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취소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 받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 후 반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재 위탁 포함)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각각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3조(수탁자 선정) ① 제2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 위원 임기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 하여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5조(경비부담)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수탁자의 회계)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복지관 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복지관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거 지출하되,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7조(직원의 채용)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자		구성원수	계	임원	직원
					기타
주요사업내용					
재 산 총 액 (천원)	기본재산			법인의 연간 수입액	
	계	목적용재산	수익용재산	수 입 액	연평균 운영경비 부담가능액
위탁대상시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수 탁 목 적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첨부서류 :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가.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사회복지법인에 한한다) 각 1부

나.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최근 3년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 감사,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라. 향후 3년간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마. 법인 재정부담 승락서(소정 양식) 1부

바.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공고 제2009-162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3. .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정선읍 광하리 일원에 조성한 생태체험학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태체험학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생태체험학습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생태체험학습장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운영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056
 - 문의전화 : 033-560-2056

붙임 :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고 하고,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체험학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전시관 , 관리실, 특산품판매장, 영상관 등
2. 자연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지 및 부대시설
3. 생태교육시설
4. 매점, 자판기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및 보호
3.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
5. 체험학습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장료) 체험학습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만 4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한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6.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학습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생태체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등)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체험학습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징수에 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체험학습장 운영의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한까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1 】

입 장 료

구분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2,000원	1,500원	1,000원	
단체	1,500원	1,000원	500원	

-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19세 미만자와 중·고학생증을 소지한자
- .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 . 어린이 : 만 4세 이상 만13세 미만자와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 . 어른 : 청소년,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자로 만 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인자
- .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

정선군공고 제2009-163호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 금지 공고

고병원성AI 전파원인인 철새 통과시기(3~4월)와 지난해 춘천시 고병원성 AI발생 원인인 재래시장을 통한 발생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닭·오리 등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 금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5.

정 선 군 수

1. 제 목 :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 금지
2. 근거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가축 집합시설의 사용제한)
3. 금지기간 : 2009. 3. 5. ~ 4. 30
4. 공고대상 및 금지내역
 - 가. 공고대상 : 정선5일장(2,7일), 여량5일장(1,6일), 임계5일장(5,10일)
 - 나. 금지내역
 - 살아있는(도축 또는 가공처리 되지 않은) 가금류(닭·오리 등) 판매금지
5.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금지 신고전화(☎560-2392)

정선군공고 제2009-176호

2009년 정선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2009년 정선군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9. 3. 9.

정 선 군 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예정인원

구 분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활동기간)	비 고
아이돌보미	20명 내외	2009. 채용일 ~ 12.31 (계약갱신시 매년 활동가능)	3월말 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가능(일정미정)

2. 돌보미 신청자격

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65세 이하의 희망자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등) 소지자 우대

나. 거주지 제한 : 신청 전 제한 없음

※ 단, 아이돌보미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정선군 전입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하고 계약종료일까지 정선군 관내 주소를 유지할 것.

3. 신청서류

- ① 활동신청서(사진첨부) - 첨부서식
- ② 반명함판 3장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간염검사가 포함된 것 - 면접합격자에 한함)
- ⑤ 관련 자격증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모집전형 일정 및 접수처

가. 신청접수 및 전형일정

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09.03.09(월) ~03.23(월) (09:00~18:00)	■ 방문접수 원칙 (우편 및 이메일 접수불가) ■ 접수기간 중 서류심사 3.23일한 개별통보	03.24(화)예정 (장소 · 시간 추후통보)	‘09.03.25(수) 예정 결과 개별통보

나. 접 수 처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아동청소년팀)

5. 돌보미 역할 및 급여 등

가. 역할

- 아이돌보미(양육돌보미) : 부모 귀가 시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 학원 등 · 하원, 등 ※가사활동 제외
- 학습돌보미 : 숙제검사, 예 · 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단순 학습보조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및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등

나. 급여 : 시간당 5천원(주말 및 심야 6천원), 아동수에 따라 추가급여 지급
소액의 교통비 지원

다. 활동시기 : 2009. 04.(아이돌보미 이용희망 가정과 연계된 후)

6. 교육일정 및 장소

- 양성교육 : 2009년 3월말 중 (5일간 50시간,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25시간)
- 보수교육 : 양성교육 후 2개월에 1회 실시 (사업수행기관)
- 강원도 소재 교육장(춘천, 원주 예정)
- 상세일정 추후 통보

7. 기타사항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가능(미이수자 향후 활동불가)
- 아이돌보미의 고용관계는 추후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 귀속됨
- 문의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실무자(033-560-2023)

붙임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 끝.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이 름			여() 남()	칼 라 사 진 (3.5×4.5cm)
주민등록 번호				
자택번호	(자택)	(휴대폰)		
거주지 주소				☐ 양육경험: 년 ☐ 양육경험 없다
가족 구성원		관계	연령	자격증 소지(해당자만)
	1			1. 보육교사 자격증 ()
	2			2. 간호사 자격증 ()
	3			3.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
	4			4. 장애아관련 자격증 () 5. 기타()
활동경험 이력사항	기 간		활 동 사 항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결격여부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활동가능지역	정선군 관내(정선, 고한, 사북, 신동,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임계) ※ 활동가능지역 3개소 이상 모두 표시할 것			
활동가능시간	☐ 정기적 < 요일 시 ~ 시 (총 시간) > ☐ 언제든지			
활동희망장소	☐ ①이용자 가정 ☐ ②돌보미 가정 ☐ ③기타(육아정보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등) ☐ ①, ②, ③ 모두 가능			
활동참여경로	☐ 관련신문 ☐ 인터넷 ☐ 주변권유 ☐ 기타 ()			
아이돌보미에 대한 기타사항				
아이돌보미 지원동기(특기/강점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면접합격 후 제출)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사업수행기관장) 귀하				

정선군공고 제2009-17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남효창 등 125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40-3 풍림아파트 908호 등 125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면허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9년 2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9년 2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9년 4월 7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9. 3. 10.

정 선 군 수

2009년 2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세 목	현주소	납세자명	세액합계	공고사유
취득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40-3 풍림아파트 908호 (3통5반)	남효창	521,24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235 중앙아파트 804동 304호 (4통2반)	전옥선	469,67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11 (1통9반)	심소연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941-1 (2통2반)	엄연숙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36-5 (5통)	박선경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7-21 (5통7반)	전찬오	8,24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아파트 114동 815호 (32통9반)	임순자	18,54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4-1 (14통6반)	강병일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2동 302호 (6통12반)	남황자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50-3 505호 (23통1반)	전용현	18,54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43-21 (13통1반)	송현주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820-43 (33통)	편상현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33-1 시티타운 101동 1411호 (4통5반)	김영숙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218	김대성	12,36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1-4 동원탄좌복지아파트 1동 202호 (5통16반)	박수원	8,24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세류동 981-4 (23통1반)	조창근	18,54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89-3 (2통)	이명현	18,54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68-22 (1통1반)	이기환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343-1 (3통4반)	양시경	18,54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88-6 (3통1반)	박용철	6,1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3-4 (2통1반)	남순옥	170,2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5-3 (5통5반)	김진수	266,5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887 (2통3반)	장진희	70,1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93 (1반)	민경자	142,3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7-1 광원아파트 403호 (1통3반)	정용민	57,8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4 가동 2호 (1통9반)	김윤철	70,1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93 (1반)	민경자	226,5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5-3 (5통5반)	유승기	347,4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1206호 (5통9반)	우향란	55,6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30-5 (3통4반)	정의진	106,8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86-2 (4통6반)	김광호	70,0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5-1 (5통3반)	추재문	134,6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34-6 (1통4반)	이영희	98,2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7 (1통5반)	이종호	68,7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북실아파트 102동 102호 (4통2반)	이명자	133,6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0-1 101호 (3통3반)	최국환	120,2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7-1 광원아파트 403호 (1통3반)	정용기	147,8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40 (1통1반)	신기순	68,7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9-3 (2통6반)	김기수	70,1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0-9 (2통1반)	고태선	122,9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5-3 (5통5반)	김진수	125,4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8-24 (9통3반)	정의영	70,1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59-2 (2통3반)	권윤숙	84,2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3-22 (2통6반)	임병택	68,7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47-1 (3통11반)	이주한	91,0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8-32 (9통4반)	권종섭	182,3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22-2 (4통7반)	전경택	70,0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00-7 정선빌라 가동 401호 (4통3반)	변용진	68,7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4 (1통9반)	김기백	120,2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상가 101호 (1통6반)	장미애	125,3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5통4반)	김경화	154,3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8 (12통5반)	최종수	133,6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7-6 (13통7반)	안준집	77,0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14통4반)	최정훈	132,9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6-2 (13통3반)	김영순	158,8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8 (12통5반)	이형하	182,3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23 (12통1반)	김형국	183,8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811-685 (10통5반)	김추미	234,0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4-16 (12통1반)	최경희	212,6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22 (10통3반)	박재성	105,0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6-1 (6통2반)	안영수	211,6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90 한라아파트 104동 106호 (7통5반)	홍용표	147,8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8 (12통5반)	최종수	70,0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61-34 고한연립주택 305호 (9통2반)	김백훈	182,3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6 (5통2반)	박영덕	182,3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53-6 (6통1반)	윤인숙	106,8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04-5 (25통)	이종근	68,7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7 (5통4반)	박용남	98,1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61-15 (9통2반)	홍미경	105,0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04 (10통3반)	엄명배	147,4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90 한라아파트 104동 106호 (7통5반)	홍용표	116,5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3 (11통8반)	박원찬	187,1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좌직원사택 10동 2호 (11통7반)	김선희	170,3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4동 403호 (2통15반)	김진훈	133,6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1동 1210호 (2통7반)	박성중	415,7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62-2 (11통7반)	김진환	192,2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96-15 (19통5반)	김해경	94,3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좌동원아파트 라동 204호 (11통3반)	이보옥	240,7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25 (3통5반)	전계영	239,9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102 (4통2반)	이영희	66,2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좌동원아파트 바동 206호 (11통2반)	박만석	332,4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좌동원아파트 나동 306호 (11통6반)	박상철	147,4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 (5통2반)	윤병아	122,1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10통5반)	민창선	122,9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366-95	삼정종합 건설	133,6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2동 906호 (2통10반)	이계선	70,0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1동 302호 (2통3반)	김영국	187,1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 (5통9반)	이성모	133,7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9통4반)	김성선	133,6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5-3 (1통1반)	탁영호	133,7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82 대림아파트 가동 303호 (1통14반)	장금식	120,4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사북선명오피스텔 1021호 (9통4반)	김정현	284,5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91-1 (3통5반)	박현우	142,3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395 (2통2반)	이맹열	70,0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82-7 (1통1반)	손대원	94,2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6 (7통1반)	윤요호	226,5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0 (2통4반)	권기현	110,4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99-5 (5통2반)	양금선	133,7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234-8 (4반)	강대성	171,0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11 (1통4반)	전숙희	87,9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76-2 (7통3반)	이상경	14,6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497 (2반)	권혁희	5,8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리 148-2 (2통2반)	박명식	171,8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1183-1 (1통6반)	임상규	133,6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548-6 (2통2반)	김홍배	119,2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548-6 (2통2반)	김홍배	173,1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1117 (2통3반)	전미자	105,0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635-7 (4통8반)	함옥순	122,91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79-1 (1통8반)	사만용	120,2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104동 101호 (1통4반)	김태호	170,3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48-1 (1통)	남정미	104,5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141-13 (4통3반)	김남호	133,7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봉정리 384 (3반)	유재천	120,0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 563 (3통1반)	박선순	158,8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봉정리 384 (3반)	유재천	125,3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 243 (2통4반)	고영년	116,5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98-2 (2통1반)	김남수	267,5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3/5	루크헤번 랜드(주)	164,8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107	정선음료 (주)	120,2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 (3통2반)	백금자	160,5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2 (2통1반)	김연길	186,1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190 (1통1반)	최종천	200,1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58-2 (2통3반)	서임석	211,6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206-6	안덕호	28,5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92-2 (3통6반)	김현주	6,080	수취인미거주

정선군공고 제2009-179호

보 상 계 획 공 고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2009신동조동리도시계획도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산업경제과 지역개발팀)

2. 사 업 명 : 2009신동조동리도시계획도로개수공사

3.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 사업현황 : 도로개설 2개노선 L=1,132.96m

[중(보)3-3 L=1,079.48m, B=11.5~12.0m, 소(국)2-15 L=53.48m, B=8.0m]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사 업 명	소재지	편입토지현황							편입물건 현황	비고
		계		사유지			국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자(명)	필지수	면적(㎡)		
2009 신동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6	5,313	3	133	3	13	5,180	0건	

5. 토지 및 물건조서(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개발팀에서 열람가능)

토 지 조 서									
토지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최우용					
		주 소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8-3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현실적 인지목	전 체 이 용 상 황	편 입 면 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조동리	209-46 (209-25)	도로	대	10	일반상업지역,중로 상대정화구역				

토 지 조 서									
토지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신임이					
		주 소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43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현실적 인지목	전 체이 용상 황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조동리	143-1 (143)	도로	대	95	자연녹지지역,중로 개발촉진지구	임운득 예미단위농업 협동조합	정선군신동읍예미리143 정선군신동읍예미리691-4	근저당채무자 근저당권자	

토 지 조 서									
토지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김희경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 741-11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현실적 인지목	전체이 용상황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조동리	151-40 (151-15)	전	전	28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 개발촉진지구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9. 03. 12 ~ 2009. 03. 25(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6.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장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267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개발팀 (☎ 033-560-2437)

7. 보상시기 및 절차 : 2009년 03월 ~ 2009년 4월초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정선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9. 본 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개발팀(☎ 033-560-24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3. 12.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1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03. 11.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03.11~ 2009.03.25(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이찬식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46-34 석경베스트빌 1동 502호	취득세(부동산)	733,880	부동산	이사감
박정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90 신영체르니아파트 720호(13통2반)	취득세(부동산)	1,808,560	부동산	이사감
민병오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리 367(2통4반)	재산세(토지)외 19건	169,720	부동산	수취인미 건주
이혜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624-17 증산그린빌리지 가동 102호(3통4반)	취득세(부동산) 외 1건	277,320	부동산	수취인불 명
최광훈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243-3 (38통2반)	취득세(부동산)	733,880	부동산	이사감
김시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15-10(16통4반)	종합토지세외4건	471,630	부동산	수취인불 명
명강용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880 반달마을 두산위브 아파트 106동 1101호(12통)	재산세(토지)외 45건	846,400	부동산	이사감
김미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193-2 202호(9통3반)	취득세(부동산) 외 1건	734,230	부동산	폐문부재